

비상상황 대비 및 대응방법

■ 비상조치 계획

가. 목적

본 조치계획은 자연적 재난이나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위험한 상태의 발생시 신속한 조치와 행동으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데 있다.

나. 종류

- 1) 자연적 재난 : 기상재해, 지진재해 등 천재지변
- 2) 인위적 재난 : 화재, 폭발, 가스유출, 산업재난, 교통재난, 도시공해 및 전쟁 재해 등

다. 신고

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행하여야 한다.

1) 방법

- ① 각 부서 자동화재탐지기의 신호를 조작하는 경우
- ② 전화,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화재발생을 신고하는 경우

2) 요령

- ① 방송시설을 사용하여 신고코자 할 때는 공장지역내에 설치된 방송시설 스위치를 누르고 방송한다.
- ② 전화로 신고 코자 할 때는 아래와 같이 행하여야 한다.
안전담당 주관부서와 조정실로 신고요령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

신고요령(예)

신고자

1. 전화, 방송시설 이용한다.
2. ○○○입니다.
3. ○○○에 화재가 발생 하였으니
4. 즉시 출동 바랍니다.
5. 확인

3) 의무

- ① 당공장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출입 및 방문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재난을 발견 시는 2-2항에 의거 신고해야 한다.
- ② 신고자는 필히 기동반 및 진화반이 도착하기 전에 필요한 조치 및 진화 장소를 안내하여야 한다.
- ③ 공장 전직원은 재난시 자기 임무를 원활히 수행키 위한 편성표(별표1)의 자기 임무를 항상 숙지할 뿐 아니라 소방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지시사항도 필히 준수해야 한다.

라. 조치

- 1) 재난이 발생한 부서는 재난종류를 전직원에게 알림과 동시에 공장운전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2) 방문객이나 해당이 되지 않는 직원은 발생 장소로부터 산재해야 하며 모든 보수작업에 대한 허가는 무효가 된다.

- 3) 발생부서는 원인이 되는 부분은 제거하거나 차단하여야 한다.
- 4) 기타 부서는 재난의 상황을 감시순찰 하면서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5) 비상운전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전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

마. 경보 및 대책

조정실에서는 화재폭발 등의 재난시 경보기를 작동하고 재난의 위치 및 재난의 종류를 방송한다.

마. 중요요원 호출

비정상 근무시에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다음 요원을 호출해야 한다.

- 1) 공장장
- 2) 관리과장
- 3) 생산부 반장
- 4) 기타 필요한 자

바. 임무

- (1) 대장 : 모든 재난과 조직을 총괄한다.
- (2) 부대장 : 대장을 보좌하여 유고시는 직무를 대행한다.
- (3) 본부소대
 - ① 지휘반

대장, 부대장의 임무수행보조
 자위소방대 지휘감독
 화재시 소방관서 연결 및 인근 소방대 지원요청
 ② 경보반
 화재경보 사이렌 취명 및 구내방송
 관계부서 관계자에게 통보

4) 소수방 분대

- ① 급수반 : 소화용수의 보존과 급수활동
- ② 소화반 : 자체소방시설을 활용한 소화활동

5) 방호복구 분대

- ① 경계반
 비상계획 및 자위소방대 유도
 반출 물건의 경비 및 출입인원 통제
- ② 대피 반출반
 인명검색 및 구조
 대피유도
 중요물품 반출이동
- ③ 방호조치 및 복구반
 방화문 폐쇄 및 기타문의 개방
 가스, 위험물 등 소화활동상의 장애물 제거
 현장 응급조치 및 복구

6) 의료구호 분대

- ① 방독반
 유해가스 제거조치
 질병, 전염병 예방에 대한 소독
- ② 의료반
 질식, 중경상자의 응급조치(구급용구 비치)
- ③ 후송반
 질식, 중경상자 병원으로 긴급후송 및 가료 조치

사. 기타

- 1) 대장이나 지휘본부에서 지시하는 사항은 상기임무와 관계없이 우선으로 수행해야 한다.
- 2) 민방위법, 민방공법, 소방법에 의한 조직은 본 비상조치에 의한 동일조직으로 한다.

아. 비정상근무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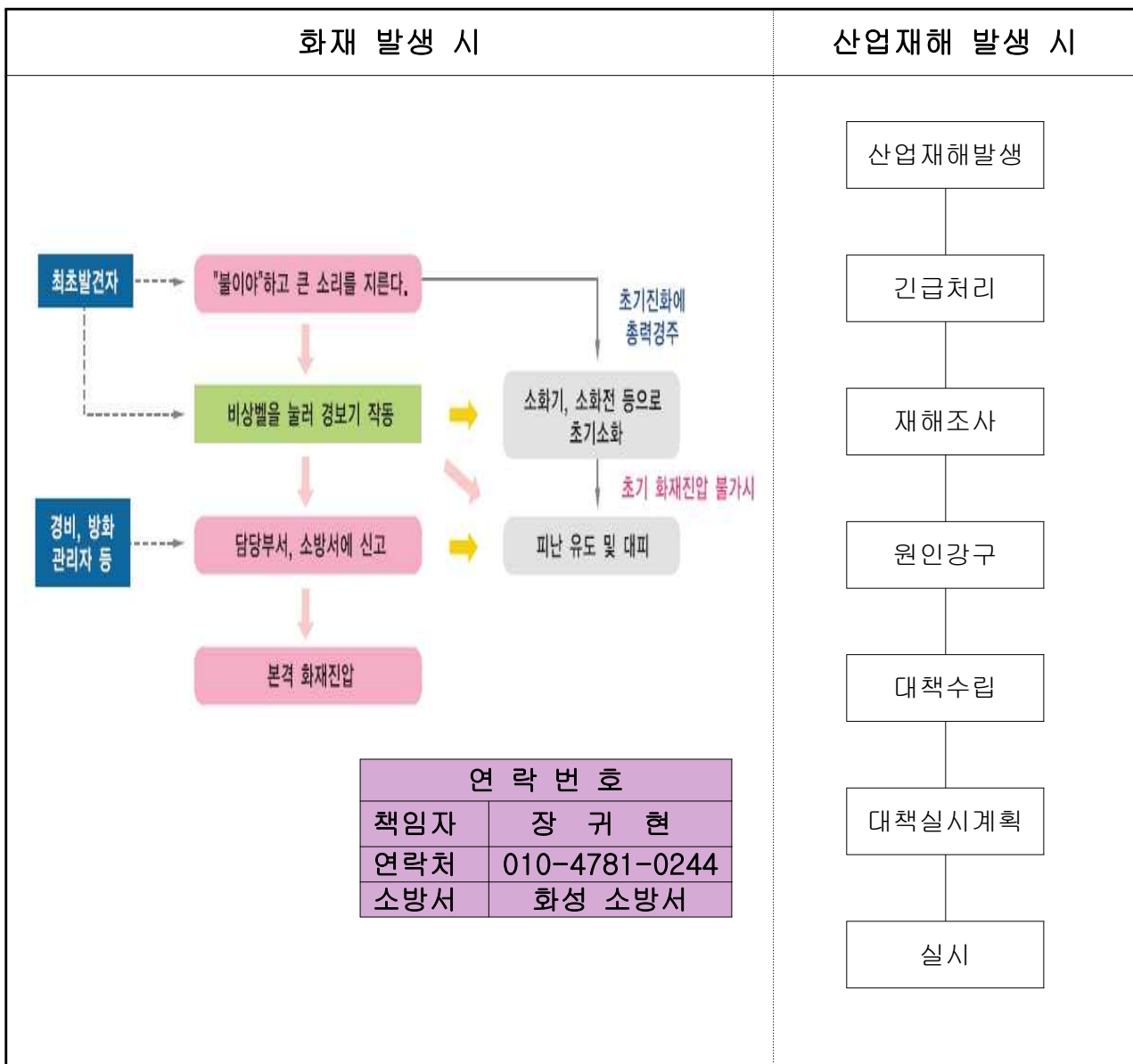
지휘반이 도착하여 정상조직 체계가 확립 될 때까지는 아래와 같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

- 1) 대장 : 공장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난을 총괄한다.
- 2) 경보반(사무실)
화재경보 사이렌 취명 및 구내방송
관련부서 및 관계자에게 통보
- 3) 소방대 유도반
소방관서 화재신고 및 인근소방대 지원요청
반출물건의 경비 및 인원 유도
- 4) 소화반 : 자체소방시설을 활용한 소화활동
- 5) 기타 : 대장이 지시한 사항은 상기임무보다 우선으로 수행한다.

■ 비상사태의 구분

- 비상사태는 조업상의 비상사태와 자연재해로 구분한다.
- 조업상의 비상사태는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.
 - 중대한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
 - 중대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
 - 독성화학물질의 누출사고 또는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
 - 인근지역의 비상사태 영향이 사업장으로 파급될 우려가 있는 경우
- 자연재해는 태풍, 폭우 및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.

■ 비상대응체계



■ 비상사태 대응 절차(순간정전)

		팀 명	생 산	팀 책임자	생산팀장:김성수
비 상 사 태 명	순간정전	비 상 사 태 등 급		담 당 자	소방관리:최홍익

처리흐름	처리 절차	주의 사항
최초 확인	최초 정전을 확인시에 생산팀원은 생산팀 사무실로 전화연락하여 각 확인 업무의 지시를 받는다.	
확인 및 보고	1. 각 설비를 확인하고, 생산팀장에게 현재의 상황을 보고한다. 2. 전기 담당자는 수배전설비의 차단기 및 휴즈 동작상태를 확인하여 생산 팀장에게 보고한다. 3. 정전시 off되는 장비는 가동 복구 및 운전 상태를 확인하여 보고하며, 자동 복구 장비는 정상적으로 복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.	
순간 정전 후 안전 조치	1. 생산팀장은 정전으로 인하여 공정 중의 위험발생 요소를 판단하여 안전조치를 각 부서에 요청한다. 2. 순간 정전으로 인하여 수배전 고압부의 VCB가 동작하여 차단 되었을 경우에는 원인(부족전압, 이상전압 등)을 확인하고 공무팀장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차단기를 투입한다. - 투입 방법은 장시간 한전 정전에 준하여 투입한다. 3. 순간 정전으로 인한 펌프의 정지, 과온, 위험이 있는 설비를 판별 하여 응급 조치를 취한다. 4. 진행 중 타부서로부터의 이상조치 요청은 팀장이 접수하고 중요도를 판단하여 담당 팀원에게 조치를 지시한다.	[우선 확인 및 조치 사항.] -수배전설비의 차단기 동작 상태 및 한전측 개폐기의 개폐여부. -전기실의 담당자 이외의자 출입 통제.
정 전 복 귀 시 안전조치	1. 차단기 미동작시 - 순간적인 정전으로 인하여 정지된 장비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생산팀장의 지시에 따른다. 2. 차단기 동작시 - 고압 차단기가 동작하여 KOP의 자체정전이 진행 되었을 경우에는 장시간 한전정전에 준한다.	-각 설비의 확인은 상황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장비부터 실시 하며, 각 설비 담당자가 확인 한다.
상황의 종료	각 팀원은 담당 장비의 확인 및 지시받은 내용의 확인이 완료되었음을 팀장에게 보고한다. 팀장은 타부서의 상황이 정상적임을 확인 후 상황을 종료한다.	

■ 비상연락망

비상연락계통도

재해 최초 발견자 신고



사무실

공장장

대표이사

관리과

비상 연락망 참조연락

1차 연락

비상방재조직
동원예비군·민방위
(☎)

재난상황실
(☎)

소방서
(☎1666-6119)

소방차 응원출동
119안전센터
(☎)

지정병원
(☎1522-2500)

2차 연락

안전관리전문기관
(☎ 241 - 5259)

경기고용노동지청
(☎ 259 - 0263)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경기남부지도원
(☎ 259 - 7149)

■재해발생시 피해 최소화 대책(응급처치절차)

1. 개요

- 1) 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원인에 따라 분류하면, 인적사고와 물적사고로 나눌 수 있으며,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응급처치를 하여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하여야 하며,
- 2) 안전사고 발생시의 응급처치는 의사의 치료를 받기 전까지의 응급적인 처치로 끝나야 한다.

2. 안전사고 원인에 따른 분류

1) 인적사고

- 가) 사고발생이 직접 사람에게 상해를 주는 사고
- 나) 협착, 말림, 절단, 추락, 낙하, 비래, 감전 등

2) 물적사고

- 가) 상해는 발생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
- 나) 화재, 폭발, 파열 등

3.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처치 요령

1) 일반적인 응급처치

- 가) 인공호흡 등 기본적인 구급처치법 평소 훈련
- 나) 비상시 구급처치를 위해 구조용구가 있는 장소, 연락방법 등 확인
- 다) 안전사고 발생시 연락방법을 정확히 알아둘것
- 라) 사고자를 안락하게 눕히고 급격한 온도 및 습도 변화 보호
- 마) 침착하고 냉정하게 신속히 재해자의 상태를 관찰하여 처치
- 바) 호흡장애 요인이 될 수 있는 혁대, 신발 등을 제거 또는 느슨하게 함
- 사) 의식이 없는 사고자에게 물 또는 음료수 공급 금지
- 아) 재해자를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함
- 자) 호흡곤란시 인공호흡을 실시하며, 응급처치 후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

2) 감전사고시 응급처치

- 가) 감전쇼크로 산소함유량이 약 1분 이내에 감소하기 시작하여 산소결핍 현상 발생
- 나) 단시간 내에 인공호흡 등의 응급조치를 할 경우 95% 이상 소생 가능
- 다) 응급처치요령
 - 감전재해 발생시 최우선으로 전원차단

- 재해자를 위험구역에서 신속히 대피후 2차 재해방지
- 인공호흡과 심장 마사지 등 응급조치
- 병원 후송

3) 전기화상, 화재사고시 응급처치

- 가) 불리 붙은 곳은 물, 소화용 담요 등을 이용하여 소화하거나 급한 경우 재해자를 굴리면서 소화
- 나) 상처에 달라붙지 않은 의복은 모두 벗김
- 다) 화상부위를 세균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화상용 붕대로 감음
- 라) 상처부위에 파우더, 향유, 기름 등을 바르지 말 것
- 마) 진정제, 진통제는 의사의 처방없이 사용하지 말 것

4) 응급처치자 준수사항

- 가) 생사의 판정은 하지 않을 것
- 나) 원칙적으로 의약품 사용은 피할 것
- 다) 어디까지나 응급처치에서 끝나고 의사에게 인계